

'95년 WTO 무역환경위원회 토의 결과 및 향후 논의전망

〈환경부 지구환경과 제공〉

GATT에서의 환경과 무역의 연계에 대한 논의 '71년 11월 "환경조치와 국제무역에 관한 작업반 (EMIT : Group on Environment Measures and International Trade) 의 설치에서 비롯되었으나 사실상 '79년 동경라운드에서 개별국의 환경목적의 규정 및 표준의 설치를 명시적으로 허용한 무역기술 장벽 (TBT: Technical Barriers to Trade) 협정을 채택하였 함으로써 시작되었다 할 수 있다.

이후 GATT내에서의 환경관련 작업은 '90년 11월 제1차 EMIT그룹 회의가 소집되어 '91년부터 국제환경협약에 포함된 무역조치와 각종 환경조치의 투명성 제고 및 환경마크, 포장요건의 무역효과등 3가지 의제를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되면서 본격화 되었다.

GATT규범의 한계를 극복하고 WTO체제를 출발시키기 위한 '94년 4월 15일 마라케쉬 각료회의에서는 "무역과 환경에 관한 협정문"을 채택하고 세계무역기구(WTO) 산하에 무역환경위원회(CTE)를 설치키로 결의하고 무역과 환경에 관한 결정문에서 환경정책과 무역과의 관계, 국제환경협약과 무역과의 관계 등 10개의 제를 결정, '94년 CTE의 준비기구인 무역환경소위에서 5차례 토의되었다.

세계무역기구(WTO)가 '95년 1월 출범되면서 무역환경위원회가 정식 발족되어 본격논의되기 시작하였으며 금년 10월까지 5차례의 회의를 개최하여 의제별로 1-2회 논의가 진행되었다.

이에 본지는 그 동안 논의된 각 의제별 주요쟁점사항 및 토의내용을 소개하고 향후 논의전망에 대해 살펴보았다.

I. WTO무역환경위원회

주요 논의 쟁점 및 토의

의제1: 국제환경협약을 포함한 환경목적의 무역조치와 다자간 무역체계 규정과의 관계

의제에서의 주요 쟁점으로는 환경협약(MEAs)에 의한 무역조치를 GATT/WTO 체계 내로 수용하는 방안으로 사전적 방식(GATT 20조의 일반예외 조항에 대한 집단 해석) 및 사후적 방식(GATT 25조의 의무면제(waiver))에 대한 사항으로 이에 대한 그 주요내용으로는 다자간 무역체계(MTS)와 다자간 환경협약(MEAs)의 마찰을 해소하는 방법으로 사전조치, 사후조치, 사후적 접근을 기초로 하여 사전조치의 장점을 취하는 절충적 입장 등 3가지 방법으로 대별되었다.

첫번째, 사전조치 지지국(미국, EU, Nordic 등)의 입장으로 GATT의 예외규정(20조)을 개정 혹은 확대해석 하는 방안으로서 사후적 접근의 단점(MEA무역규정 교섭에 신축성 부재 등)을 고려하여 GATT 20조 K항을 신설하여 MEA에 대한 우선적 취급을 허용하거나 제20조의 집단해석(collective interpretation)을 통하여 실질적 효과를 확보하는 방안으로 제시되었다.

두번째, 사후적 조치 지지국(인도, 홍콩, 이집트 등) 입장으로 기존의 MTS체제가 보유하고 있는 메카니즘을 충분히 활용 가능(필요성, 유효성, 비례성, 최소무역제한성, 무차별 원칙 등 활용)하므로, 백지 수표와 다름 없는 사전적 접근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세번째, 절충적 조치 지지국(캐나다, 한국, 아르헨티나

등) 입장으로 무역규제조치의 성격과 향후에 미칠 영향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없는 경우 사전적 조치(ex-ante)는 백지 수표와 같으므로 사계별 검토를 원칙으로 한 사후적 접근에 기반을 두되 MEA상 무역 조치의 예측사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일정한 원칙을 개발, 활용하자는 주장, 즉 절충적 조치 지지국 입장은 MEA상 무역조치 수용을 위하여 MTS를 개정하는 것은 반대하고 MEA상의 무역조치는 계속적으로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어 궁극적으로는 사후적 점검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의제2: 무역관련 환경조치와 다자간 무역체계 규정과의 관계

의제2는 의제1,3 등 다른 의제와 상당부분이 중복되므로 의제 1,3의 논의 결과에 따라 논의 방향이 제시될 전망이다.

의제2의 주요쟁점으로 현저한 무역효과를 가지는 환경조치인 투명성, 보조금, 경사관세(tariff escalation), 국경세조정(border tax adjustment), 제품의 제조공정 및 생산방법 등을 GATT/WTO 규정으로의 수용하는 문제가 논의되었다.

이에 대해 노르웨이는 보조금, 경사관세, 국경세 조정(근거조항으로서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 6.1항 관련) 및 동종상품(like products)의 개념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제시하였으며 알젠텐의 경우는 보조금 및 상계조치 분야에 대한 토의에 중점을 둘 것을 희망하며, 특히 환경보조금의 근거가 되는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 8조 2.3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또한 EU의 입장은 CTE가 농업보조금에 대한 검토를 하는 것에 반대하며, PPMs 잇슈(Life Cycle 분석, Eco-labelling)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시하였다.

의제3: 환경목적의 부과금.세금 및 기술규정 등과 다자간 무역체계의 규정과의 관계

의제3은 환경목적의 부과금.세금에 대한 국경세 조정문제로서 국경세 조정과 WTO 규정과의 관계, 국경세 조

정 적용대상 범위(투입물의 해석, 동종상품의 개념)등이 논의되었으며 환경마크 요건에 제품무관련 PPMs의 적용 여부가 주요쟁점사항으로 논의되었다.

이에 국경세조정을 포함한 환경부과금.세금(의제3a) 대해서 선진국은 환경세에 대한 국경세 조정문제의 세부검토 필요성과 PPMs를 포함한 국경세 조정범위 등에 대한 논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으며, 여기에 동종상품(like-products), 투입물(inputs)의 해석이 불분명함을 인정하고 이에 대한 개념정립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한편 개도국은 환경부과금.세금이 각국의 국내정책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으로 수입제품에 부과하는 것은 곤란하며, 특히 PPMs를 근거로 한 국경세 조정은 논의 대상이 아님을 강조하였다.

상품요건인 의제3b에 대해서 제품의 생산공정과 관련된 상품요건의 적용과 이에 따른 무역효과문제는 선진국과 개도국간에 입장이 대립되었다.

여기서 개도국은 상품요건에 PPMs를 적용하는 것은 각국이 사회적.환경적 특성을 감안하지 않는 것으로 공정무역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한국, 인도, 호주, 홍콩 등은 제품무관련 PPMs에 근거한 환경마크는 역외성(extra-territoriality) 문제를 내포하며 수출국의 환경문제 개선효과도 기대할 수 없음을 시사하고 국제적 기준 및 과학적 근거의 부족으로 차별적 무역효과가 우려된다고 주장하였다.

선진국 및 개도국의 대부분 국가가 제품무관련 PPMs에 근거한 환경마크가 현 TBT협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공감하였으며 이에 TBT협정 적용여부에 대한 논의가 MTS의 제품무관련 PPMs 포함 여부 논의로 확대하는 것을 경계해야 함을 지적하였다.

또한 제품부 관련 PPMs에 근거한 환경마크의 TBT협정 적용 여부는 불분명하나 제품특징에 관한 환경마크는 TBT협정의 적용대상이므로 TBT협정의 기본원칙 및 투명성요건을 준수할 의견이 제시되기도 하였다.

대부분의 국가가 제품무관련 PPMs에 근거한 환경마크의 차별적 무역효과 억제를 위해서는 투명성의 확보.강화가 기본이며 궁극적으로 상호인정 및 동등성(equivalency)을 추구해야 한다는데 공감하고 환경마크에 대한 정부(중앙정부, 지방정부, 비정부 표준기관)의 개입정도에 관계없이 투명성 요건을 포함한 각종 요

건이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함에 공감대을 형성하였다.

의제4: 환경관련 조치에 대한 투명성과 국제무역 규범

다음 의제4에서는 WTO 규정이 환경조치 및 환경관련 무역조치의 투명성 확보에 충분한가의 여부와 환경조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지방정부 및 민간부문의 조치에 대한 투명성 확보 방안과 환경관련 정보제공의 원활화를 위한 조회처(enquiry point) 설치 등이 논의되었다.

국제무역규범에서의 투명성 규정의 환경관련 조치에 대한 적용대상범위에 대한 논의에서 미국, 노르웨이 등은 기존의 투명성 규정 및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협정(TBT)과 위생 및 검역규제적용에 관한 협정(SPS) 규정에 의거하여 대부분의 환경관련 조치의 투명성이 확보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알젠텐, 인도, 브라질, 캐나다 등 대다수 국가는 현 WTO 규범 하에 투명성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환경관련 조치가 다수 있음을 지적하고, 특히 eco-labelling 등 자발적 표준, PPMs을 기반으로 한 무역조치, 지방정부가 취하는 조치 등이 현 투명성 규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투명성 요건의 수준(level)과 관련, 사전(ex-ante) 또는 사후(ex-post) 통보의무와 기존의 투명성 기준을 보완하는 새로운 메카니즘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는데 여기서 미국은 현 무역규범으로 투명성 보장에 충분하며 사전·사후 통보방식의 적절한 조합을 강조하고 대부분의 국가들은 적용기간의 확보와 사전협의를 통한 시장접근 제고 측면에서 사전 통보방식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MEAs와 MTS에서의 현 투명성 규정의 차이점에 대한 문제점과 보완 방안으로 노르웨이 등 일부 국가들은 환경목적의 무역조치(특히 GATT 제20조 관련)에 대한 투명성 요건 적용여부와 관련하여 의제1과의 연계 논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으며 대다수의 국가들은 조회처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TBT/SPS 협정상의 조회처 형태가 바람직하다고 인정하였다.

의제5: MTS와 MEAs 상의 분쟁 해결 체계와의 관계

이번 의제에서는 MEAs 및 GATT/WTO 회원국 여부에 따른 분쟁해결 절차의 접근방식으로 MEAs 및 GATT/WTO 당사국간에 또는 당사국과 비당사국간의 분쟁발생시 WTO 및 MEAs의 분쟁해결 절차중 어느 절차를 선택할 것인지의 문제에 대해 논의되었다.

또 MEAs와 GATT/WTO의 분쟁해결 접근방식의 차이점 보완 및 상호절충에 관해서 MEAs는 기본적으로 당해조약의 이행에 초점을 맞추어 "monitoring, reporting, inspection" 등 사전 예방적 감시에 치중하고 마지막 단계로 국제 사법재판소에 의한 해결방안을 규정하는 한편, GATT/WTO는 산하에 분쟁해결기구(DSB)를 두어 사전예방보다는 사후해결절차에 중심을 두는 것에 대해 중점 논의되었다. 여기서 EU, 노르웨이, 알젠텐 등은 분쟁발생 case와 관련, 양국이 공히 MEAs 당사국인 경우와 일국만 당사국인 경우로 구분하여 초보적 분석들을 제시하고 보다 구체적인 검토의 필요성을 제기하였으며 캐나다, 홍콩, 호주 등은 환경관련 분쟁에 있어서도 WTO 당사국의 권리와 의무가 침해되지 않아야 함을 강조하였다. 미국, EU 등 다수의 국가들은 WTO하의 "분쟁 해결규칙 및 절차에 관한 협정" 13.2에 의거하여 환경관련 무역분쟁에 있어 외부 환경전문지식의 활용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브라질, 캐나다의 경우 전문가의 조언 필요성을 인정하되 이것이 패널에서의 결정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을 강조하였다.

의제6: 개도국, 특히 최빈개도국과 관련하여 환경조치가 시장접근에 미치는 영향과 무역제한, 왜곡제거에 따른 환경적 이익

의제6에서는 환경조치가 시장접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논의되었는데 이는 개도국의 시장접근 저해요인과 해소방안, 그리고 환경비용의 내부화, PPMs 기준이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논의되었다.

또 무역자유화가 환경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서도 논의되었으며 이는 무역자유화가 경제이론상 자원의 효율적 배분, 삶의 질 향상, 환경보전에 기여하는 적절한 방안 확

인 및 분석에 관한 논의가 주요 쟁점화되었다.

그 주요토의내용을 보면, 우선 환경조치의 시장접근에 대한 효과(의제 6 전단)에 대해서는 환경세, 환경관련 기술규정 등 환경목적의 각종 경제조치와 환경기준 등을 개도국의 시장접근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바, 이를 해결하기 위한 투명성 제고가 필요하고 TBT/SPS의 조회처(enquiry point) 활용 또는 시장접근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환경조치의 database 작성이 제기되었다.

또 환경조치가 관세 및 비관세 장벽으로 활용될 소지가 있으며, 개도국의 시장접근 촉진을 위하여는 기술규정문제, 개도국의 산업·무역구조로 인한 환경비용 발생문제(특히 섬유, 목재, 식품분야) 등의 해결방안이 요구된다고 제기되기도 하였다.

한편 개도국에 대한 시장접근을 증대하기 위하여 무역자유화, 일반 특혜 관세제도(GSP: 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 환경조치에 대한 개도국의 준수 스케줄 유예, TBT의 기술 원조, 환경청정기술 확산 등의 확대운영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다음은 무역자유화의 환경이익에 대한 내용으로 무역조치는 다자간 무역 체제의 기본 원칙(개방, 평등성, 비차별 대우, 최혜국대우, 내국민대우)준수가 필요함이 제기되었는데, 여기서 개도국은 환경기준의 상향조정이 국내 상품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궁극적으로 시장접근에 기여한다는데 공감하면서도 선·후진국 간의 사회·경제적 여건의 차이를 고려해야 하고, 긍정적 효과는 재정적, 기술적 능력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입장이며 또 선진국은 개도국의 환경목적 달성을 위한 지원관련, WTO 체제내의 개도국 관련 조항(기술이전, 능력형성 및 유예허용 등) 활용이 가능함을 지적하였으며 무역왜곡 조치의 제거가 환경에 이익을 주는 문제와 관련하여 경사관세(tariff escalation)의 문제 및 보조금의 문제(케언즈 그룹: 호주,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 농산물 수출국가)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는 만약에 선진국이 산림보호를 목적으로 목재 완제품에 대해 높은 수준의 관세 부과시 생산시설이 제조 국가로부터 수입국으로 이전되는 부정적 영향이 발생할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같은 문제점이 제기된 것이다.

케언즈그룹은 농업보조금이 가격형성 체계를 왜곡시켜 무역자유화의 장애요인이 되고, 궁극적으로 보조금 지원

국가의 농업 보조금은 비료 및 살충제의 과다 사용으로 한계 농지가 확대됨으로써 환경파괴 및 농업수출 개도국의 시장접근에 장애를 끼친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의제7: 국내 판매금지 물품의 수출문제

이 의제에서는 GATT 제20조 (b)항에 의한 판금품에 대한 예외적인 수입규제조치 및 WTO내의 규범화 필요성에 대한 국내 판금품의 수출문제와 GATT/WTO 규정과의 관계, 그리고 국제환경협약(MEA)의 판금품 규제 조치와 GATT/WTO 역할과의 관계로서 GATT/WTO 규정과 MEA에서 다루어지지 않는 국내 판매금지 물품에 대한 WTO가 취급해야 할 범위와 제품의 선정 문제 등을 중심으로 논의가 되었다.

이에 선진국은 UNEP 결의에 따라 진행중인 유해화학물질의 교역에 관한 사전승인 통보제도(PIC: prior informed consent) 절차의 규범화 노력과 몬트리올의 정서, 바젤협약 및 유해화학물질 수출·입에 관한 London Guideline 등의 국제 규범과의 중복 회피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국제환경협약에서 대부분 판금품을 언급하고 있으며, 추가적용시 MEAs에서 대처할 수 있는 것이므로 WTO에서의 논의 자체에 의문을 표시하기도 하였다.

개도국은 투명성 확보, 통보절차 및 개도국의 능력형성 등에 치중·검토되어야 함을 지적하고 판금법 문제는 환경보전에 직접적인 유해성이 있으므로 예외사항(GATT 제20조)의 적용 가능성을 제기하였다.

의제8: 지적 재산권에 관한 협정과 환경과의 관계

의제8에서는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TRIPs)이 환경 친화기술의 이전촉진에 충분한지 여부와 생물다양성협약상의 특허권(IPR) 관련조항과 TRIPs의 관계가 중점 논의 대상이었다. 이는 TRIPs 제27조 2항의 환경저해 기술의 특허대상 제외규정과 제31조 환경기술이전의 강제실시권의 규정이 소극적 규정이므로 TRIPs규정을 보완·검토하는 문제와 생물다양성협약 제16조의 기술

이전을 중요시하는 개도국과 지적재산권을 중시하는 선진국의 견해 차에 대한 사항이다.

여기서 개도국은 현행 TRIPs 규정의 보완 또는 새로운 해석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는데, 이는 기술이전에 있어 현행 생물다양성협약은 확실한 보장장치의 의미 미비로 인하여 지구생태계보전에 중요한 역할을 해 온 유전자원 보유국이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고 또한 선진국의 유전공학기술에 대해 막대한 특허권 사용료를 지금하는 역효과가 발생할 문제를 제기하였다.

이에 선진국은 기술이전 촉진을 위해 필요한 제도는 이미 TRIPs에 모두 규정되어 있으므로 CTE의 논의 대상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는 기술이전의 문제는 MEA에서 다루어져야 할 것임을 들어 특허권(IPR)을 기술이전 촉진과 결부시키려는 것에 대하여 반대하는 것이다.

의제9: 서비스 교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과 환경과의 관계

의제9에서는 GATT 14조(b)에서는 GATT 제 20조와 같이 인간, 동식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에 대해 자의적이거나 불필요한 차별, 위장된 보호무역의도가 없는 한 협정상의 규정의 적용에서 제외할 수 있음을 규정한다는 내용으로 서비스교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 14조의 (b) 적용기준 및 충분성에 대해 논의 되었다.

서비스교역의 환경측면 고려를 위한 GATS 제14조의 개정 필요성과 국제환경협약과 GATS의 관계에 대해서도 논의되었는데 대부분의 국가가 GATS 14(b)는 GATT 20(b)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므로 현 단계에서는 의제 1(환경협약과 GATT/WTO와의 관계)에 논의를 집중시킴으로서 GATT 20조에 대한 검토 경험을 바탕으로 GATS 14(b)의 개정 필요성을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

또 GATS 14(b)의 충분성 검토를 위해 첫째 환경보호를 위한 서비스교역 제한 조치 파악, 둘째 동 조치의 GATS규정 적합성 검토, 세째 GATS규정에 어긋나는 경우 GATS 예외조항의 적절성 검토방안 등 3단계 검토

에 대다수의 국가가 동조하였다.

II. 향후논의 방향과 논의 쟁점및 토의일정

1. 향후 논의방향

지금까지의 논의는 10개 의제에 대하여 공식회의를 통하여 이해당사국별로 의견을 개진하고 사무국에서 취합, 분석하여 새로운 문서를 작성한후 이를 기초로 재토의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앞으로는 또한 새로운 작업계획이 작성될 '96년 5월까지 각 의제(item)별 토의보다는 핵심 쟁점사항(issues)에 대하여 논의가 전개되며 모든 논의 쟁점은 공식회의에서 토의하고 공식회의후에 개최되는 비공식회의에서는 논의쟁점에 대한 상세한 분석의 필요성이 있거나 토론을 위하여 특정의제에 대한 토의문서가 제출될 때에 토의가 진행될 것이다.

한편, 무역환경위원회(CTE)의 권한을 진전시키기 위하여 작업프로그램의 세부화 및 명확화가 이루어질 전망인데 이는 지속가능한 개발을 증진시키기 위한 무역조치와 환경조치와의 관계확인이 이루어지고 개방성, 비차별성과 조화를 이루도록 WTO규정의 수정이 필요한지에 대한 권고안 작성에 대해 논의될 것이며, 이와함께 서비스교역과 환경에 관한 각료 결정으로 위임된 사항의 이행에 대해서도 논의가 될것으로 보인다.

또한 향후 환경마크(eco-labelling)에 대한 TBT협정의 적용분석과 환경마크에 대한 규정 보완의 필요성을 분석 하기 위하여 무역환경위원회(CTE)와 무역기술장벽위원회(CTBT)의 비공식합동회의가 개최될것으로 보이고 CTE 사무국은 유용하고 진전된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UNCTAD, UNEP 및 다른 국제기구와 협력을 증진시킬 전망이다.

의제(items)	논의 쟁점(issues)	연구(studies)	토의 일정
의제1: 국제환경협약을 포함한 환경목적의 무역조치와 다자간 무역 체계의 규정과의 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EAs와 WTO정에 따라 취해진 무역조치의 합치성 보장문제 · 관련MEA에 포함된 무역 조치에 대한 WTO투명성 체계의 적절성 · 의제 5와 연계 		'96. 2월초 ('95. 2. 7~8)
의제3: 다자간 무역체계의 규정과 다음사항과의 관계 a)환경목적의 부과금과 세금 b)기준 및 기술규정, 포장, 환경마크, 재활용 등 환경관련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경세 조정이 가능한 환경세와 WTO규정의 양립 · 환경마크에 대한 TBT협정의 적용 가능성 · 환경과 무역측면에서 환경마크에 관한 WTO규정의 적절성 여부 제정의 보완 및 투명성 확보 필요성 · 무역과 환경측면에서 규정의 보완과 투명성 확보의 필요성을 포함한 포장, 다른 환경규정 재품요건과 기준에 관한 WTO규정의 적절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국의 환경세에 관한 정 보수집 	'96. 2월초 ('96. 2. 7~8) CTE와 CTBT와의 비공식 합동회의 '96. 2월초 ('96. 2. 7~8)
의제4:환경관련 무역조치의 투명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원국들이 환경조회처 설치하여야 한다는 제안의 심사 · 의제 1.3과 연계 		'95. 12.14~15 '96. 3
의제5:다자간 무역체계와 국제환경 협약상의 분쟁 해결 체체간의 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제1과 연계 · 환경분쟁 해결에 있어 환경전문가의 참여 문제 		'96. 2월초 ('96. 2. 7~8)

의제(items)	논의 쟁점(issues)	연구(studies)	토의 일정
의제6: 개도국에 있어서 시장접근에 관한 환경조치의 효과와 무역제한, 왜곡제거의 환경적 이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장접근에 있어 환경 조치의 효과 · 경사관세(tariffescalation) 보조금, 과도한 관세를 포함한 무역제한이나 왜곡 제거로 인한 환경적 이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장접근에 있어서의 환경조치의 조사를 위한 메카니즘의 구축 	'96. 3월중순 ('96. 3.13~14)
의제7: 국내 판 금 품 수출 문제	· DPG협정의 필요성 여부		'95. 12..14~15
의제8: 지적재산권 협정과 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기술이전 접근을 위한 TRIPs 협정과 환경청정기술 개발과의 관계 · TRIPS협정과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의무를 포함한 MEAs와의 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청정기술이전의 저해 요인에 대한 분석 	'95. 12..14~15
의제9: 서비스와 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비스교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의 14조의 충분성 · 관련 MEAs와 GATS와의 연계 가능성 		'96. 2월초 ('95. 2. 7~8)
의제2: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정책과 다자간 무역체계화의 관계			'96. 5('96. 5.21 22)
의제10: 민간단체와의 관계 및 투명성과 개방성 증진방안			· 일반이사회에서 채택시 CTE에서 논의